## 무경계전공제 운영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무경계 전공제'란 대학의 비전 의 이 근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학사제 도를 의미한다.			제2조(정의) ① '무경계 전공제'란 대학의 비전에 근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전공 및 학사제도를 의미한다. ④ '타대학 수학'은 학점교류, 컨소시엄 등으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3조(구성) ① 무경계 전공제는 교육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자율전공, 혁신전공, 타대학수학으로 구성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자율전공 관련 규정은 자율전 공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혁신전공 관련 규정은 우리대학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b>제4조(적용대상)</b> ① <del>자율전공 관련 규정은</del> 자율전공 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삭제
		제5조(교육과정) ① 무경계 전공제 자율전공 교육과 정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규정에 근거하여 전공별 로 편성한다. 단, 전공 특성상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구분	내 <del>용</del>		
전공기초 교과목	학생 주도적 진로, 전공 탐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 된 전공 기초 교과목	•	
전공탐색	타전공 교과목 중 전공 탐 및 관련 기초능력 습득을		

제6조(수강신청) ② 자율전공의 전공기초 교과목 제6조(수강신청) ② 자율전공<del>의 전공기초 교과목 전</del> 야 한다.

하여 이수하는 교과목

교과목

및 관련 기초능력 습득을 위

③ 전공기초, 전공탐색 교과목을 제외한 타전공한다. 교과목 수강은 '자율선택 수강신청'의 형태로 시③ 전공기초, 전공탐색 교과목 전공 및 지정교과목을 행한다.

전체, 전공탐색 교과목 3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 채, 전공탐색 교과목 3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 다. 개설 교과목과 지정 교과목을 모두 신청하여야

제외한 타전공 교과목 수강은 '자율선택 수강신청'

		의 형태로 시행한다.		
제7조(자율전공의 전공	'선택)	제7조( <del>자율전공의</del> 전공선	택)	
제8조(자율전공 전공배	  정)	제8조( <mark>자율전공</mark> 전공배정	)	
제9조(자율저곳 이수회	<b>'점 인정)</b> 자율전공 소속으로	제9조( <del>자율정공</del> 이수한점	<b>│ 인정)</b> ① 자율전공 소속으	
	· ·		정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자율전공 이수과목	전공선택 후 이수구분	자율전공 이수과목	전공선택 후 이수구분	
전공기초 교과목	전공(필수,선택) 또는	<del></del> 전공 <del>기초</del> 교과목	전공(필수,선택) 또는	
	일반선택 전공(필수,선택) 또는		일반선택 <del>전공(필수,선택) 또는</del>	
전공탐색 교과목	일반선택	전공탐색 교과목	일반선택	
자율선택 수강신청	전공(필수,선택) 또는	자율선택 수강신청	전공(필수,선택) 또는	
교과목	일반선택	교과목	일반선택	
교양 교과목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	교양 교과목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	
		② 학적 변동 허가 학기	부터 배정된 스쿨(전공) 교육	
		과정을 따른다.		
	계 전공제 관련 업무는 교육	· ·	기대학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	
개발처에서 담당한다. 제11조(위원회)		로 한다.	<u>.</u> 신전공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	
세11조(귀현외)			신선등 교육과정는 내익의 교	
			원)가 없고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특성상 교육과정혁신위		
		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공 내 소단위전공(마이크로디그리,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단위전공		
		의 운영과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702 720 4 77 4	
제12조(위원회 기능)			계 전공제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공 신청 및	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	
		사결정을 목적으로 '무	경계 전공제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년장과 교양교육원 포함 스쿨	
		(전공)별 1인 이상의 전인	]교수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	1육개발처 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다	대표하고 소집하며, 무경계전	
		공제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 역량평가를 위한	난 스쿨(전공) 평가위원회 <del>는</del> 를	

	<del>- 구성할 수 있으며, 스쿨(전공)별 1인 이상의 전임교</del>
	수로 구성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위원회 기능) 무경계 전공제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의결)한다.
	1. 전공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현장조사에 관
	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3. 무경계 전공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율전공 재학생의 전공 배정에 관한 사항 (심의)
	5. 무경계 전공제 학생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6. 기타 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세부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
	며, 재적인원 <del>2/3</del>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추가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
	다.

## 무경계 전공제 운영 규정

제정 2025. 1. 6. 개정 2025. 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경계 전공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무경계 전공제'란 대학의 비전에 근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전공 및 학사제도를 의미한다.

- ② '자율전공'은 문화산업의 자기주도적 창의용(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편제정원이 있는 전공 및 제도를 의미한다.
- ③ '혁신전공'은 대학의 다양한 교육 목적을 위해 편제정원 없이 실험적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전공 및 제도를 의미한다.
- ④ '타대학 수학'은 학점교류, 컨소시엄 등으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④ '전공 배정'이란 자율전공으로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을 학생이 희망하는 다른 전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구성) ① 무경계 전공제는 교육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자율전공<del>과,</del> 혁신전공, 타대학 수학으로 구성한다.

② 전공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2장 자율전공

제4조(적용대상) ① <del>자율전공 관련 규정은</del>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무경계 전공재 자율전공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규정에 근거하여 <del>전공별로</del> 편성한다. 단, 전공 특성상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율전공 교육과정은 전공기초, 전공탐색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구분하며, 전공기초 교과 목은 이수구분상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구분	이수구분	<del>내용</del>
전공기초	전공필수	학생 주도적 진로, 전공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정된 전
교과목	전공선택	공 기초 교과목
전공탐색		타전공 교과목 중 전공 탐색 및 관련 기초능력 습득을 위하여
교과목	=	이수하는 교과목

제6조(수강신청) ① 대학 전체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율전<del>공의 전공기초 교과목 전체, 전공탐색 교과목 3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del> 개설 교과목과 지정 교과목을 모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전공기초, 전공탐색 교과목 전공 및 지정교과목을 제외한 타전공 교과목 수강은 '자율선택 수강신청'의 형태로 시행한다.
- ④ 교양 교과목의 경우 일반 수강신청 형태로 시행한다.

제7조(<del>자율전공의</del> 전공선택) ① 자율전공 소속 학생은 당해연도 내 소정의 기간 중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공선택 신청시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정의 기간 중 신청서 미제출시 전공-학생 또는 전공-학부모간 상담을 거쳐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 ④ 1학년 1학기 과정 이수 중 성적을 인정받고 휴학하는 경우 미리 '전공선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자율전공 소속 학생은 입학 후 1년간 소속 변경을 위한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del>자율전공</del> 전공배정 <del>기준</del>) ① 전공 배정은 신청자의 희망 전공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공 배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③ 전공 배정은 희망전공 역량평가(60%)와 1학년 1학기 직무능력평가(40%)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 ④ 학생 역량평가를 위해 희망 스쿨(전공) 평가 위원을 구성하며, 포트폴리오 심사 외에 면접 등 별도의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스쿨(전공별) 역량평가 결과와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전공 배정은 '무경계 전공 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한다.
- ⑥ 1지망 불합격시 2.3지망으로 순차 배정한다.

제9조(<del>자율전공</del> 이수학점 인정) ① 자율전공 소속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배정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자율전공 이수과목	전공선택 후 이수구분
전공 <mark>기초</mark> 교과목	전공(필수,선택) 또는 일반선택
전공탐색 교과목	<del>전공(필수,선택) 또는 일반선택</del>
~ 자율선택 수강신청 교과목	전공(필수,선택) 또는 일반선택
교양 교과목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

② 학적 변동 허가 학기부터 배정된 스쿨(전공) 교육과정을 따른다.

제10조(전용대상) ① 우리대학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교육과정) ① 혁신전공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집단위(편제정원)가 없고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정 특성상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공 내 소단위전공(마이크로디그리,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단위전공의 운영과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4장 운영

제10조(운영) ① 무경계 전공제 관련 업무는 교육개발처에서 담당한다.

제12조(위원회) ① 무경계 전공제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공 신청 및 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무경계 전공제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교양교육원 포함 스쿨(전공)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개발처 처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집하며, 무경계전공제 업무를 총괄한다.
- ⑤ 학생 역량평가를 위한 스쿨(전공) 평가위원회는를 구성할 수 있으며, 스쿨(전공)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무경계 전공제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의결)한다.

- 1. 전공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3. 무경계 전공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자율전공 재학생의 전공 배정과 성적 인정에 관한 사항 (심의)
- 5. 무경계 전공제 학생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6. 기타 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del>2/3</del>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전공배정 신청서

# 전공배정 신청서

		I	
신청자	스쿨(전공)		
	학 번		
	성 명		
	1순위		
희망 전공	2순위		
	3순위		
유의사항	1. 전공배정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2. 신청기간 이후에는 전공배정 신청을 번복할 수 없음 3. 역량평가(60%)와 직무능력평가(40%)를 합산하여 전공배정을 함. 역량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본인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공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인)			
자율전공 지도교수:(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